- 2022년 제2회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2년 제2회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 1. 24.

동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 용 직급	채용 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담당업무)	근무부서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1명	임용일부터 2년 (주 35시간) ※ 최대 10년 뱀) Å 연장가능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업장 인전계획 및 인전교육계획 수랍실시 사업장 점검·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원인조사·분석 위험물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 이행 업무분장을 통한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등 	동 해시 행정과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방공무워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고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공고일 현재)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 별: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 주 지 : 제한없음

2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일 현재 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기준 (자격요건과 경력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 자격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키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키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기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인정범위》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 경력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안전 관련 근무경력

4 보수 및 복무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채용분야	기준 등 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55,731	39,582	주 35시간 적용

- 성과연봉 : 근무 2년차부터 업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별도 책정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초과근무수당 등
- 복리후생 : 단체보험가입 및 복지포인트 지급 등

[2] **복무조건**

-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및 추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여부를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면접시험을 통해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01.24.(월) ~ '22.02.09.(수)	'22.02.07.(월) ~ '22.02.09.(수)	'22.02.11.(금) 예정	추후 별도 공지	추후 별도 공지

- ※ 채용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동해시 홈페이지**(www.dh.go.kr) 인사정보-시험정보 게재
- ※ 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지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동해시청 및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 033-539-8575)
 - ※ 응시수수료 등 접수확인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 후, 반드시 접수처에 확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09시~18시)
 - 인터넷(e-mail) 접수 (권장): kty8722@korea.kr
 - 방문접수 :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①]
 - ※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 날인, 동해시청 1층 민원과에서 수입증지 발급
- 이력서 1부 [별지②]
 -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③]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⑥]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⑦]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관인 및 발급확인자의 날인, 연락처 포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응시요건 등에서 정한 자격을 최종점검하며, 이력서상에 기재된 사항 등에 대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예정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6항을 참고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기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 청구기간경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 다만, 인터넷(e-mail)으로 접수한 경우와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에 대한 의무 없음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033-539-8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 무 기 술 서

직 무 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산업안전분야	산업안전관리 전담인력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다급 (7급 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강원도 동해시	행정과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안전계획 및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 사업장 점검·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
	○ 산업안선모건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사양 이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등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필요역량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산업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전문성) 및 관련지식
필요지식	○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일반지식
	○ 대인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관련분야 : 산업안전관리 전문인력
용시		□ 자격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 격 요	자격 및 경력 (두가지 모두 충족)	《 관련학과 인정범위》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건		□ 경력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안전 관련 근무경력